

등록번호	대중교통과-5078
등록일자	2019. 09. 25
결재일자	2019. 09. 25
공개구분	비공개(6)

주무관	행정사무관	대중교통과 과장	종합교통정책 관
김순영	장기영	김동준	2019. 9. 25. 김상도
협조자	규제개혁법무담당관		윤종수

「군인·의무경찰대원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고시 추진	주요 검토사항	
	정 책 중 요 도	보통
	민원·갈등 가능성	낮음
	기관간 이견가능성	낮음
	홍보대책 필요성 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	보통
	서민생활 관련성	보통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' 19.8.26)에 따라 군인
이나 의무경찰대원의 운전경력 등 요건을 고시하고자 함

교 통 물 류 실

[대중교통과]

1. 추진 배경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'19.8.26)에 따라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의 운전경력 등 요건을 별도로 고시할 필요
-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은 해당 사용업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요건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(여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다목)

2. 주요 내용

-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에 대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을 규정
- 군(의무경찰) 복무기간 동안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8개월 이상일 것
- 군(의무경찰) 복무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자일 것

3. 향후 일정

- 입안(방침결정): '19. 9월
- 의견조회(지자체·사업자 단체 등) 및 행정예고(20일): '19. 9월 ~ 10월
- 고시 : '19. 10월